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2-16호

「상주시 공모사업관리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5일

상주시의회 의장



「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」 예고

1. 제정이유

- 가.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, 추진현황 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
- 나. 공모사업의 의회 공유 등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의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관리계획의 수립 및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의회보고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마.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22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: shjgoods@korea.kr
- 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- 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2)에

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